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

이사회회의록

일시 : 2024년 9월 27일(금) 오전 11시 30분

장소 : 노포일식(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 11층)

社會福祉法人 無窮愛學園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 회의록

- 일 시 : 2024년 9월 27일(금) 11:30 ~ 12:30
- 장 소 : 노포일식(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 11층)
- 참석자 : 대표이사 이금지
이 사 이정철, 이용창, 송흥식, 오주남
감 사 정봉환
- 참석직원 : 무궁애학원 원장 박민현, 사무국장 이진경
미래직업재활원 원장 유기용
새힘 팀장 구미서
- 회의안건 :
 - 부의안건
 1.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2. 제2호 의안 -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 기타안건
 1.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새힘 시설장 임명 보고
 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래직업재활원 시설장 임명 보고

1. 개 회 (사회자: 이금지 대표이사)

○ 이금지 대표이사의 인사 후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를 11시 30분에 노포일식(양산시 물금읍 증산역로 135, 11층)에서 개최하다.

2. 성원 보고

○ 이금지 대표이사가 재적이사 7명 중 5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3. 개회 선언

○ 이금지 대표이사가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 개회를 선언하고 신임 오주남 이사를 소개하다.

○ 신임 오주남 이사가 본인의 약력을 소개하고 이사로서의 다짐을 말하다.

4. 전차회의록 처리

○ 이용창 이사가 유인물 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송흥식 이사가 재청하여 처리하다.

5. 안건 토의

< 제1호 의안 : 정관 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

○ 이금지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으로 정관 변경 심의에 관한 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줄 것을 주문하며 박민현 원장에게 설명을 요청하다.

○ 박민현 원장이 정관 조문 변경에 대한 사항으로 경상남도에서 2024년에 실시한 도내 사회복지법인 정관 전수 점검에 따라 지자체에서 관련 법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정관), 동법 제18조(임원) 제1·2·3·6항, 동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제2항, 동법 제26조(설립허가 취소 등)

제1항 제4호, 동법 제27조(남은 재산의 처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제9항, 동법 제7조(이사회 기능), 동법 제8조(이사회 소집) 제2항 제1·2호 및 제3항, 동법 제9조(의결 정족수 등) 제2항, 동법 제10조(감사의 직무) 제1항 제2호, 동법 제11조(재산) 제2항>에 따른 정관 조문 수정 요청이 있어서 정관 조문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을 설명하다.

<붙임> 1.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 변경 전·후 정관 조문 비교표 참고

○ 이금지 대표이사가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심의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용창 이사가 이사 정수가 증가하는지를 묻자 박민현 원장이 이사의 정수는 원래대로 7명이나 변경(안) 사항은 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이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고 답변하다.

○ 이금지 대표이사가 추가 의견을 묻자 추가 의견이 없어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심의에 관한 의견을 묻자 이정철 이사가 동의하고, 이에 오주남 이사가 재청하여 이금지 대표이사가 가부를 물으니 이의가 없어 제1호 의안 정관 변경 심의에 관한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 제2호 의안 :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관한 사항 >

○ 이금지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상정하고 심의·의결해 줄 것을 주문하다.

○ 무궁애학원 박민현 원장이 법인 1차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진경 사무국장이 거주시설 무궁애학원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유기용 원장이 직업재활시설 미래직업재활원 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 보고하다.

<2024년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 1차 추가정예산(안)>

<2024년 무궁애학원 2차 추가정예산(안)>

<2024년 미래직업재활원 1차 추가경정예산(안)>

○ 이금지 대표이사가 제2호 의안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관한 의견을 묻자 송흥식 이사가 2024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원안대로 받기로 동의하고, 이에 이용창 이사가 재청하여 이금지 대표이사가 가부를 물으니 이의 없어 이에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언하다.

[2024년 2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원)

시설명	예산	추가경정예산	증감
법인(1차)	733,000,000	810,000,000	(증)77,000,000
무궁애학원(2차)	4,410,000,000	4,428,000,000	(증)18,000,000
미래직업재활원(1차)	986,000,000	1,086,000,000	(증)100,000,000

6. 폐 회

○ 이금지 대표이사가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새힘 시설장을 현재 무궁애학원 박민현 원장이 겸직을 하였으나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개채용을 통하여 현재 사회재활교사로 근무하는 구미서 팀장을 시설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미래직업재활원 유기용 원장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함에 따라 공개채용을 통하여 김은영씨를 채용함을 보고하다.

○ 이금지 대표이사가 추가 기타안건 여부를 물으니 이용창 이사가 폐회하기를 동의하고, 이에 이정철 이사의 재청으로 이금지 대표이사가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 2024년 제1차 임시이사회 폐회를 선언하고 같은 날 12시 30분에 이사회를 마친다.




2024년 9월 27일

참석자 대표이사 이 금 지 

 이 사 이 정 철 

 이 사 이 용 창 

 이 사 송 흥 식 

 이 사 오 주 남 

확 인 감 사 정 봉 환 

 감 사 서 동 우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 변경 전·후 정관 조문 비교표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1장 목적 및 사업	제 1 조 이 법인은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의 재활 및 보호에 관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이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을 개괄적으로 명시
	제 2 조 이 법인은 제 1 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운영사업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③ 재가장애인복지사업 ④ 기타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제2조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거주시설 설치 운영사업 ②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의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설치 운영사업 ③ 재가장애인복지사업 ④ 기타 목적사업 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변경 없음
제2장 명칭 및 사무소	제 3 조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 이라 칭한다.	제3조 이 법인은 사회복지법인 무궁애학원이라 칭한다.	변경 없음
	제 4 조 이 법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69에 사무소를 둔다.	제4조 이 법인은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청룡로 69에 사무소를 둔다.	변경 없음
제3장 재산 및 경리	제 5 조 이 법인의 재산은 별지 재산 목록에 재산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제5조 이 법인의 재산은 별지 재산목록에 재산 및 기타 수익으로 한다.	변경 없음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3장 재산 및 경리	<p>제 6 조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별 관리한다.</p> <p>기본 재산은 별지 기본재산 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한다.</p>	<p>제6조 <u>이</u>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별 관리한다. 기본 재산은 별지 기본재산 목록의 재산 및 장래 기본재산으로 취득되는 재산으로 하고 보통 재산은 그 외의 재산으로 <u>하되, 기본재산의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u></p>	<p>본 법 인 → 이 법인의 변경, 평 가가액 사항 문구 추가/ 관련 사항 구체적 지개</p>
	<p>제 7 조 이 법인의 기본 재산을 매각, 기부, 담보양도, 교환 등으로 처분코저 할시는 이사회 의 결 의를 경유하여 주무장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7조 ① 기본 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 의 결 의를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p> <p>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3월말 까지 전년도 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문구수 정 및 추가 /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p>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3장 재산 및 경리	제 8 조 이 법인의 경비는 보통 재산으로 이를 충당한다.	제8조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문구수정/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제 9 조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 년도에 의거한다.	제9조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고,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문구수정/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제 10조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0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이 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수정/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제 11조 결산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1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문구수정/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제 12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에 조월 사용키로 한다.	제12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 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고,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문구수정/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4장 임원	<p>제 13조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① 대표이사 1명 ② 이사 6명 ③ 감사 2명</p> <p>필요에 의하여 전항 임원 이외에 상무 이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상무이사는 현직 이사중에서 선출한다.</p>	<p>제13조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p> <p>① 대표이사 1명 ② 상임이사 1명 ③ 이사 7명(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④ 감사 2명</p>	문구수정 및 일부삭제/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p>제 14조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p> <p>② 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4조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p> <p>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p> <p>③ 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시·도사회보장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p> <p>④ 임원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p> <p>⑤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p> <p>⑥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p>	문구수정 및 추가/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4장 임원	제 15조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고 이 법인의 주요업무를 심의 결정한다.	<p>제15조 이 법인 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p> <p>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p> <p>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p> <p>③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p> <p>④ 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4장 임원	<p>제 16조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사무를 통리하며 이사회 의 의장이 된다. 단, 대표이사가 부재시는 상무이사가 이를 대리한다.</p>	<p>제16조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 의 의장이 되며,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p> <p>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 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p> <p>③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 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문구수정 및 추가/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p>제 17조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으며 직무는 다음과 같다.</p> <p>① 이 법인 업무 집행의 사항의 감사</p> <p>② 재산 및 경리사항의 감사</p> <p>③ 전 ①, ②호 결과가 부정한 점을 발견하였을 시는 이사회 또는 주무장관에게 보고한다.</p> <p>④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할 시는 대표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다.</p>	<p>제17조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p> <p>①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p> <p>②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p> <p>③ 제1항 및 제2항 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p> <p>④ 제3항 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p> <p>⑤ 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 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p> <p>⑥ 이사회 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p>	문구수정 및 추가/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4장 임원	제 18 조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재선 될 수 있다. ① 대표이사 3년 ② 이사 3년 ③ 감사 2년	제18조 이 법인의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으며 연임 될 수 있다. ① 대표이사 3년 ② 이사 3년 ③ 감사 2년	문구수정/용어정비
	제 19 조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9조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변경없음
	제 20조 이 법인의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또는 이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20조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문구수정/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제 21조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제21조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 제26조 일괄정비/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제 22조 이사회는 매년 1회 3월중에 정기이사회를 개최하고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또는 이사 과반수 이상의 서면 요청이 유할시와 본 정관 제 17조 제③항에 의한 감사의 서면요청이 유할시는 이사회를 대표이사가 지체없이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제22조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매년 3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5장 이사회	<p>제 23조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전 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3조 ① 이사회의 의사(議事)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③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제21조 ~제26조 일괄정비/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p>제 24조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③ 의사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한다.</p>	<p>제24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써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할 여유가 없을시는 임기의 처리로써 대표이사가 이를 전결하고 즉시 이사회의 추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본 정관 제 25조 2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11호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p>	
	<p>제 2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을 따로히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① 재산의 취득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p>	<p>제25조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p>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5장 이사회	<p>②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③ 사업운영 및 계획에 관한 사항 ④ 수지예산에 중요한 수입 또는 지출에 관한 사항 ⑤ 이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체의 책임자 진퇴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중요한 사항</p> <p>이사중 전기 ⑤호의 직을 겸하고 있는 이사는 해결의에 참석할 수 없다.</p>	<p>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일시 차입금에 관한 사항 10.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1.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p>	제21조 ~제26조 일괄정비/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p>제 26조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써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득할 여유가 없을시 임기의 처리로써 대표이사가 이를 전결하고 즉시 이사회의 추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본 정관 제 18조 및 동 25조, 제 ①호, 제 ②호, 제 ③호에 관한 사항에 의한다.</p>	<p>제26조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참석 임원 전원(의장 포함)과 감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p>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제6장 해산	제 27조 이 법인을 해산코저 할 시는 이사회 의 전원 결의를 경유 하여 도지사에게 해산 신고한다.	제27조 <u>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 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	문구수정/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제 28조 이 법인 해산시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 결의를 경유하여 주무장관의 허가를 득한 후 국가 또는 본 법인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사회사업 기관에 기부기로 한다.	제28조 <u>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한다.</u>	문구수정/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신설> 제7장 사무조직 및 운영	<신설>	제29조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장 및 조
	<신설>	제30조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경상남도 권고(안)에 따름

구분	변경 전의 정관 조문	변경 후의 정관 조문	변경 내용 및 사유
<p><신설> 제8장 보칙</p>	<p>제 29조 이 정관은 이사회의 결의를 경유하여 주무장관의 인가를 득하지 않으면 변경할 수 없다.</p>	<p>제31조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법인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p>	<p>장 신설 및 조·</p>
	<p>제 30조 이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이를 정한다.</p>	<p>제32조 이 정관 시행에 관한 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p>	<p>문구 변경/ 관련</p>
	<p>제 31조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제33조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p>	<p>사항 구체적 기재</p>
	<p><신설></p>	<p>제34조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p>	<p>장 및 조 신설/ 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p>
<p>부칙</p>	<p><신설></p>	<p>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은 '별지 2' 와 같다.</p>	<p>부칙 신설/ 관련 사항 구체적 기재/ 별지2 추가</p>

설립시 임원명단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대표이사	3년	박우평		경남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
이 사	3년	유만수		경남 김해군 가락면 봉림리
이 사	3년	박윤학		경남 양산군 원동면 내포리
이 사	3년	김봉헌		경남 양산군 물금면 가촌리
이 사	3년	유명조		경남 양산군 물금면 물금리
감 사	2년	박도현		경남 김해군 김해읍 대성동
감 사	2년	박봉수		경남 동래군 장안면 좌천동